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4. 12. 17  
시민보사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0회 영등포구의회(정기회)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(1994년 12월 17일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% 이하로 인구증가예체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 사업비를 금년말까지만 징수하고 '95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보급수수료징수를 완전폐지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비로 자궁내장치 시술 2,000원, 콘돔(1갑) 200원, 먹는 피임약(1싸이클) 230원을 징수하였으나,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% 이하로 인구 증가예체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'95년 1월 1일부터 보급수수료 징수를 완전폐지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정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,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1990년 보건사회부 훈령인 가족보건업무규정에 의거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와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 제2조 2항 2호와 제4조에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'94. 9. 2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제는 인구증가 예체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고 있는

시점에서 각구에서는 '94년도 사업 종료인 금년 말까지 피임약제기구 및 진료비의 징수와 가족계획 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'95. 1. 1부터는 완전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을 요합니다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비로 자궁내장치 시술 2,000원, 콘돔(1갑) 200원, 먹는 피임약(1싸이클) 230원을 징수하였으나,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% 이하로 인구 증가예체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'95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조례안 같이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보급수수료 징수를 완전폐지 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비로 자궁내장치 시술 2,000원, 콘돔(1갑) 200원, 먹는 피임약(1싸이클) 230원을 징수하였으나,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% 이하로 인구증가예체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'95년 1월 1일부터 보급수수료 징수를 완전 폐지

### 3. 관계법령

- 가족보건 업무규정 제14조 2항(피임약제등의 보급)
- 보건소법 제4조 제1항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 
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<별표>중 “피임약제 및 기구보급”란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〈생 략〉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 1.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 (개정 90. 2. 15) 2.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3. 항결핵제 보급 4. 유료접종	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〈현행과 같음〉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 1.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 (개정 90. 2. 15) 2. 〈삭 제〉 3. 항결핵제 보급 4. 유료접종
현 행	개 정(안)
제4조(세입재활용) ①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70%는 서울 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수입으로, 30%는 구 수입으로 하며 시수입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보조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하고 구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사용한다. 다만,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자궁내피임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 세입 조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고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1건당 1,000원은 전액 불임수술사후관리비(대한불임시술협회)로 사용한다.	제4조(세입재활용) ①〈삭 제〉

현 행					개 정(안)
<별 표>					<삭 제>
구 분	종 목	단위	금액	비 고	
2. 피임약 제 및 기 구보급	가. 피임약 제 (21정 또 는 28정 임)  나. 콘돔(6개 입)	1싸이클	23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먹는 피임약 330원, 콘돔 300원으로 하고 이중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.</li> <li>• 자궁내장치 수수료증 1건당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임시술 사후관리비 (대한불임시술협회) : 1,000원</li> <li>-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 : 1,000원으로 한다</li> </ul> </li> </ul>	

##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 대한 건의안

의안  
번호 287

제출년월일 : 1994. 12. 20.  
제출자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영동포 618-111번지 일대 17.867m<sup>2</sup>(녹지조성 : 5.136m<sup>2</sup> 미보상 : 12.731m<sup>2</sup>)는 장기투자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00억이나 되나 '95년 5억 책정 등으로 볼 때 40년이 소요되는 바 본 사업책정은 불합리하므로 철도연변 시설녹지를 주차장시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함.

### 2. 주요골자

당초 본 사업은 시비보조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'95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자금 115억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철도연변 시설녹지를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면 주차난 해소 및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음.

### 건의문

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'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 철도변녹지시설 예산안이 장기투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연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보상업무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당초 이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'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, 주차장시설자금이 115억이 확보되는 바 철도변 시설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철도변 토지보상도 일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확보도 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변경을 요청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.

1994. 12. 20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일동